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0
----------	-------

발의연월일 : 2018. 11. 12.
발의자 : 백혜련 · 서삼석 · 송옥주
박홍근 · 송갑석 · 송기현
제윤경 · 김영진 · 윤후덕
표창원 · 신창현 · 강병원
박범계 · 박영선 · 박주민
이종걸 · 윤준호 ·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

제안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구체화하여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 관리를 제외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의 검찰청 직원 조항 신설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나.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다.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2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죄

제46조제2항 중 “그 지휘”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5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부 칙

i)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단서 신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폐 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 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 죄 등 중요범죄
<신 설>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신 설>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 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 법 」 제152조, 제154조부 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 죄
2. 범죄수사에 관한 <u>사법경찰</u> <u>관리</u> 지휘·감독	2. ----- 특별사법 경찰 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 원 -----

